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13.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달서구청장(기획조정실)
- 제출일자: 2023. 9. 1.(금)
- 회부일자: 2023. 9. 1.(금)
- 상정 및 의결: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9. 13.)

2. 개정이유

- 국 신설 및 조직개편을 통해 달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필수인력 증원을 통해 구민 만족도 향상 등을 목표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총 계: 1,299명 → 1,313명(+14)
 - 집행기관: 1,262명 → 1,275명(+13)
 - 의회사무기구: 37명 → 38명(+1)
-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안 별표 2)
 -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현행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3% 이내	32% 이내	4% 이상	1% 이내
변경	〃	〃	23% 이내	〃	31% 이내	〃	〃
증감	-	-	+1%	-	△ 1%	-	-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총 계: 1,299명 → 1,313명(+14)
 - 일반직 계: 1,296명 → 1,310명(+14)
 - 4급 : 6명 → 7명(+1)
 - 5급 : 63명 → 65명(+2)
 - 6급이하: 1,225명 → 1,236명(+11)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3. 8. 3. ~ 8. 23.): 의견 없음
 - 행정규제 심사: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제안설명서 참조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화·세분화 된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과 신설 및 부서 재배치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필수인력 증원으로
 - 총 정원수는 1,313명(정무직 1, 일반직 1,310, 별정직2)으로 일반직 정원 14명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직 직급별 정원은 4급 1명, 5급 2명, 6급 5명, 7급 3명, 8급 5명이 각각 증가하였고, 9급 2명이 감소되었으며, 기관별로는 구 분청 12명, 동 1명, 의회사무국 1명이 증가하였음.

-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 개요

구 분	총 계	구 분 청	보 건 소	동	의 회
현 행	1,299	813	91	358	37
조 정	1,313	825	91	359	38
증 감	증 14	증 12	-	증 1	증 1

-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일반직공무원)

구 분	총계	4급이상 (2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책정기준	100%	1%이내	7%이내	23%이내	33%이내	32%이내	4%이상	1%이내
현 행	1,296	7(1)	63	282	428	367	148	1
조 정	1,310	8(1)	65	287	431	372	146	1
증 감	증 14	증 1	증 2	증 5	증 3	증 5	감 2	-

- 정무직 1· 별정직 2 (미포함)

- 관련 법령을 검토 한 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정원의 관리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
- 2023년도 우리구 인건비 예정액은 1,220억원 정도로, 행정안전부에서 내정된 기준인건비 1,113억원 보다 107억원 정도 초과 소요되지만, 정부정책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과 법령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필수인력 증원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